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선박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선박의 요건 중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의 경우에는 “2007년 11월 4일 전에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최종적으로 발급받은 선박”인 경우로 한정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선박안전법령의 적용 제외대상 선박에 대한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과도한 가중처분의 누적에 따른 국민의 권익 침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9. . ~ 9.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수입된 선박인 경우에는 2007년 11월 4일 전에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최종적으로 발급받은 선박으로 한정한다) 중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박

가. 평수(平水)구역[호소(湖沼: 호수와 늪)·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안에 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1)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
- 2) 압항부선(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부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여객운송이나 화물운송 등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나. 연해구역(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여객운송이나 화물운송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1) 항만건설작업선

2) 압항부선

3)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제2조제3항 중 “제1항제3호가목1)·2)”를 “제1항제3호가목1)부터 3)까지”로, “나목1)·2)”를 “나목1)부터 3)까지”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한국선주협회”를 “한국해운협회”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제외 선박) 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제2조(적용제외 선박) 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u>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u>	3.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u>선박(수입된 선박인 경우에는 2007년 11월 4일 전에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u>
<u>가.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平水)구역{호소(湖沼: 호수와 늪)·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u>	<u>국적증서를 최종적으로 발급 받은 선박으로 한정한다) 중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박</u>
	<u>가. 평수(平水)구역[호소(湖沼: 호수와 늪)·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u>
	<u>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u>

외한다.

1)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

2)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나.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1) 항만건설작업선

2) 압항부선(押航艇船: 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부선을 말한다) 또는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

을 말한다]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1)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

2) 압항부선(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부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여객운송이나 화물운송 등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나. 연해구역(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여객운송이나 화물운송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1) 항만건설작업선

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② (생 략)

③ 제1항제3호가목1)·2)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호 나목1)
·2)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등
은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7
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를 받아야 한다.

제18조(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법 제70조에 따라 외국의 항
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명령
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명세
를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
간신문 등에 3개월의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

2) 압항부선

3)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
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3)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
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가목1)부터 3)까지
----- 나목1)
부터 3)까지 -----

-----.

제18조(공표) ① -----

에 배포할 수 있다. 1. (생략)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u>한국선 주협회</u> 3. (생략) ②·③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 ----- ----- <u>한국해 운협회</u>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연 락 처	(044) 200 - 5831